

창원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19가단1182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룡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김영학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세원, 담당변호사 노경신

변 론 종 결 2021. 5. 4.

판 결 선 고 2021.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2017. 4.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4. 19. 체결된 상속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7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원고는 김해시 E에서 식육판매업을 하였다. C, D은 부산 동래구 F에서 'G'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 2) 원고는 C, D과 2015. 7. 14. 식육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8. 10. 24.까지 C, D에게 계속적으로 식육을 공급해 왔다.
- 3) C은 망 H(2015. 4. 5. 사망, 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D과 피고는 그들의 자녀이다.

나. 원고의 C,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발생

원고는 C, D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C,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2034호)에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4. 25.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33,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 D의 재산처분행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피고, C, D, I, J은 2017. 4. 19. 위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7. 4.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근저당권의 말소와 이 사건 부동산 중 C, D 상속지분(합계 5/11)의 가액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4,68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인 2005. 11. 4.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후 2018. 3.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중 C, D의 상속지분 합계 5/11에 해당하는 가액은 33,273,000원(C 지분 가액 19,963,800원, D 지분 가액 13,309,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와 대금의 결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단가, 거래시기 등에 관하여서까지 미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에 기하여 거래당사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아니하며, 주문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만 채권이 성립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참조).

2) 갑 4호증의 기재 및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4.부터 계속적으로 식육을 공급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2017. 4. 19. 당시에 C, D에 대하여 26,143,601원 상당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부터 C, D에게 식육공급거래를 계속해 오긴 하였으나, 위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이루어지기 전에 C, D으로부터 공급할 식육의 구체적인 수량, 종류, 거래시기 등을 정하여 의뢰를 받았고, 그에 따라 식육을 공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2017. 4. 20.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C, D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만 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2017. 4. 20.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15. 7. 14.부터 2017. 4. 19.까지 발생한 원고의 C, D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26,143,601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C의 무자력 여부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1, 4호증, 을 6,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부산 동래구 F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7,0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가액 19,963,8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C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참조).

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은 2017. 4. 19.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갑 3호증, 을 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망인 사망 이후인 2015. 5. 26. 피고로부터 상속지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피고는 2018.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를 D의 자녀 L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아 29,730,800원을 C 명의 'G' 사업계좌통장으로 송금해 주었다. ③ C, D은 위 돈으로 같은 날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채권자인 M(3,934,900원), N(520만 원), O(400만 원), P(90만 원), Q(371,140원), R(137,180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2018. 3. 5. 채권자인 S(110,000원), T(1,062,000원), U(3,440,000원), V(1,320,000원), W(100만 원), X(1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도 약 18개월 동안 C, D에게 계속하여

식육을 공급하여 왔고, C, D은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23회에 걸쳐 7,85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1) 원고와 거래가 종료된 2018. 10. 24. 이후인 2018. 11. 13.에 300만 원, 2018. 12. 7.에 50만 원을 변제하였다(위 변제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⑤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신에 어머니인 C이 위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전기료 등을 납부하며, C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경부터 C의 관리비(약 월 7만 원 ~ 10만 원 이하), 전기료(약 월 1만 원 ~ 4만 원), 가스비 등을 납부하여 왔고, C에게 생활비 등으로 일정 금액(월 약 50만 원)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C, D은 비록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포기하였지만, D은 피고로부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의 지분 가액(13,309,3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채무변제에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C,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부터 원고와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일부 변제해 왔으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가 C을 금전적으로 부양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C,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기장군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9.9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남 양산군	[]	대 3590㎡
2. 경남 양산군		대 11835㎡
3. 경남 양산군		대 13771㎡

(대지권의 표시)

1, 2, 3 소유권 대지권 29196000분의 24614. 끝.

2

1) 1) 2017. 5. 17. 500만 원, 2) 2017. 6. 1. 500만 원, 3) 2017. 6. 30. 500만 원, 4) 2017. 8. 2. 500만 원, 5) 2017. 9. 12. 500만 원, 6) 2017. 10. 14. 500만 원, 7) 2017. 11. 3. 500만 원, 8) 2017. 12. 8. 500만 원, 9) 2018. 1. 19. 300만 원, 10) 2018. 2. 9. 100만 원, 11) 2018. 2.

12. 100만 원, 12) 2018. 2. 14. 100만 원, 13) 2018. 2. 28. 100만 원, 14) 2018. 3. 2. 500만 원, 15) 2018. 3. 21. 100만 원, 16) 2018. 4. 2. 100만 원, 17) 2018. 4. 9. 150만 원, 18) 2018. 6. 1. 500만 원, 19) 2018. 6. 23. 200만 원, 20) 2018. 7. 2. 400만 원, 21) 2018. 8. 13. 500만 원, 22) 2018. 9. 1. 400만 원, 23) 2018. 10. 1. 300만 원